|  |  |  |
| --- | --- | --- |
|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관리방법(시범시행)>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지발관자[2016]7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지적재산권국 및 관련 부서 :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의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관리방법(시범시행)>을 제정하여 인쇄발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할 것을 명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보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  2016년 9월 12일  첨부 :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신청표  연락담당자 : 특허관리사 관지엔(關建)  전화번호 : 010-62086299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관리방법(시범시행)>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제1장 총칙  제1조 행정집행인력 자격관리 제도를 실행하고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특허행정법 집행의 규범성과 근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률•법규와 규장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즉 <특허행정법집행증>이라 함은 특허행정법 집행 자격을 취득한 합법적 증빙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통일적으로 제작 및 발급하는 특허행정법 집행인력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집행 직책을 이행하고 특허행정법 집행 활동에 종사하는 신분증명을 지칭한다.  이 밥법에서 특허행정법 집행표지라 함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통일적으로 감독하여 제작 및 발급하는 특허행정법 집행인력이 공무 집행 시 착용하는 전용 표지를 지칭한다.  제3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서 소지인의 성명, 성별, 사진, 소속기관, 직무, 집행 지역, 증서 발급기관, 증서 번호, 증서 발급시간, 검사기록 등.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일련번호제를 시행한다.  특허행정법 집행표지는 명찰, 뱃지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양식과 규격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4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범화, 등급화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전국 특허행정법 집행인력의 증서 신청, 심사•발급, 검사, 감독 등 업무를 책임진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특허행정법 집행증서에 대한 일상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의 신청, 심사•발급  제5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기율과 법을 준수하고 공정 및 청렴하며 양호한 직업도덕을 갖추어야 한다.  (2) 특허행정법 집행 업무 직능을 구비한 부서와 <특허행정법 집행 업무지침>(제7.2.2.1.2조)의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기관의 업무인력이어야 한다.  (3) 특허 법률•법규•규장 및 관련 행정 법률•법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조직하거나 국가지적재산권국의 동의하에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가 조직하는 특허행정법 집행인력 업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특허행정법 집행 자격고시를 통과한 자이어야 한다.  제6조 각 급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업무인력은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신청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통일적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7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연도 평가에서 '불적임' 평가를 받은 경우;  (2) 최근 2년간 행정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기율 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  (3) 발급하지 말아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8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증서 소지인은 지체없이 그가 소속되어 있는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상급을 거쳐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보고한다.  특허행정법 집행증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증서 소지인은 반드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신청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고 추가로 성명, 성별, 소속기관, 직무, 증서 번호, 분실/훼손 사유 등 내용이 포함된 기존 증서 효력 소멸에 관한 설명문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공인을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 성•자치구•직할시의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통일적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9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소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신청표>를 다시 작성하여 기존 증서와 같이 소속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집행증서 갱신발급 신청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근 또는 직무 변동이 있을 경우;  (2) 부서•기관의 합병, 신설 또는 명칭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증서 소지인은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기존 증서를 소각처리하고 갱신된 증서를 발급한다.  제3장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의 사용, 관리  제10조 특허행정법 집행인력은 특허행정법 집행 직책 이행 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소지하고 주동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집행표지를 착용하여야 한다.  특허행정법 집행인력은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를 공무 활동을 제외한 기타 활동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특허행정법 집행인력은 특허행정법 집행증서에 기재된 집행 구역 내에서 집행 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행정법 집행인력은 유효기간 내에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을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는 1인 1증서 1번호 제도를 시행한다. 증서 소지인은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수정, 복제, 대여, 저당, 증여, 매매, 변조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소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소속되어 있는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는 그의 집행증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하여 말소처리 하여야 한다.  (1)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제때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에서 전출된 경우;  (3) 사직, 사퇴, 장기 휴가, 정년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4) 증서발급기관이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기 제(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증서를 말소당한 자는 2년 내에 다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소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소속되어 있는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는 그의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일시적으로 압수하여야 한다.  (1)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法定) 직책 이행 또는 공무 집행 시 집행증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시를 거부하였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기율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입건 및 심사 중에 있으며 결론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3) 파면 이외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에 의거하여 집행 직책의 이행을 정지당한 경우;  (5)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고의적으로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저당, 증여, 매각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압수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집행 증서를 일시적으로 압수당한 자는 반드시 그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 설명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서를 압수당한 기간 내에 행정집행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소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소속되어 있는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는 그의 집행증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하여 취소처리 하여야 한다.  (1) 법을 집행함에 있어 법정(法定) 권한을 초월하거나 법정(法定)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2) 직책 이행 및 공무 집행이 아닌 기타의 상황에서 집행증서를 사용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3)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저당, 증여, 매각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함으로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변조한 경우;  (5)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불법•범칙 활동에 이용한 경우;  (6)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 직무유기 등 배임 행위를 행한 경우;  (7) 공직 파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8)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거나 형벌을 선고 받은 경우;  (9) 기타 불법•범칙 행위를 행함으로써 더 이상 특허행정법 집행 업무에 종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취소당한 자는 다시 특허행정법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일시적으로 압수당하였거나 말소당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 지체없이 특허행정법 집행표지를 그가 소속되어 있는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특허행정법 집행증서의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특허행정법 집행표지를 계속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특허행정법 집행증서의 검사  제18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는 검사제도를 시행하며 검사는 2년을 주기로 한번씩 실시한다.  제19조 증서 소지인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정황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집행 업무 평가 정황;  (2) 집행 교육훈련 이수 정황;  (3) 집행 기율 위반 또는 중대 집행 과실 정황;  (4) 장려 또는 징계 정황;  (5) 기타 정황.  제20조 집행증서 검사 신청에 대하여 검시가관은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각각 처리한다.  (1) 검사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검사기관은 증서의 검사기록 란에 당해 연도 검사 통과 전용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증서 소지인이 계속해서 특허행정법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2) 검사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에서 통과시키지 아니한다.  제21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소지한 자가 연도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규정에 따라 집행 업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서 통과시키지 아니한다.  제22조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효력이 소멸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회수하여 소각처리한다.  제5장 부칙  제23조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방법을 어기고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를 무단 제작, 발급, 사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율처분을 내리거나 법률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24조 그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이 특허행정법 집행표지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양식•색상•도안의 표지 또는 헷갈리기에 충분한 표지를 생산, 판매 또는 착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25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는 6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회수하여 소각처리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갱신된 증서를 발급한다.  제26조 국가지적재산권국 및 특허국, 특허재심사위원회 등 산하 기관의 업무인력이 소지하는 특허 집행증서와 집행표지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경제기술개발구,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등 제반 비(非) 행정구역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업무인력은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신청 시 집행 구역의 상황 설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각 지적재산권보호원조센터와 신속권리보호센터 및 제반 비(非) 행정구역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업무인력이 집행증서를 소지하여 지적재산권국의 사건 처리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인사 규정에 부합되도록 임시 겸직 또는 차출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이 방법은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관리사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9조 이 방법은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이 그 이전에 공표한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 **关于印发《专利行政执法证件与执法标识管理办法（试行）》的通知**  国知发管字〔2016〕70号  各省、自治区、直辖市、新疆生产建设兵团知识产权局，局有关部门：  　　为加强对专利行政执法证件与执法标识的管理，规范专利行政执法证件与执法标识的使用，特制定《专利行政执法证件与执法标识管理办法（试行）》，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特此通知。  　　国家知识产权局  　　2016年9月12日  附件：专利行政执法证件和执法标识申领表  联系人：专利管理司 关 健  电 话：010—62086299  专利行政执法证件与执法标识管理办法  （试行）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落实行政执法人员资格管理制度，加强专利行政执法证件与执法标识管理，提升专利行政执法的规范性与严肃性，依据有关法律、法规和规章，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专利行政执法证件，即《专利行政执法证》，是取得专利行政执法资格的合法凭证，是由国家知识产权局统一制作颁发，专利行政执法人员依法履行行政执法职责、从事专利行政执法活动的身份证明。  　　本办法所称专利行政执法标识，是指由国家知识产权局统一监督制作、监督颁发，专利行政执法人员在执行公务时着装上佩带的专用标志。  　　第三条 专利行政执法证件的主要内容包括：持证人的姓名、性别、照片、工作单位、职务、执法地域、发证机关、证号、发证时间、核验记录等。专利行政执法证件实行全国统一编号。  　　专利行政执法标识包括胸牌、徽章等，具体样式和规格由国家知识产权局统一规定。  　　第四条 专利行政执法证件和执法标识实行全国统一规范、分级管理制度。  　　国家知识产权局负责全国专利行政执法人员证件的申领、核发、核检、监督等工作：各省、自治区、直辖市管理专利工作的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专利行政执法证件的日常管理工作。    第二章 专利行政执法证件与执法标识的申领、核发  　　第五条 申领专利行政执法证件和执法标识的人员应符合以下条件:  　　（一）遵纪守法，公正廉洁，有良好的职业道德：  　　（二）具备专利行政执法工作职能的部门及符合《专利行政执法操作指南》（第7.2.2.1.2条款）申领条件的单位的工作人员：  　　（三）掌握专利法律法规、规章及相关行政法律、法规：  　　（四）参加国家知识产权局组织或者经国家知识产权局同意后由管理专利工作的部门组织的专利行政执法人员上岗培训班，并通过专利行政执法资格考试。  　　第六条 各级管理专利工作的部门的工作人员申请领取专利行政执法证件和执法标识的，须填写《专利行政执法证件与执法标识申领表》，一并提交所在单位，经所属省、自治区、直辖市管理专利工作的部门审核后，统一报送国家知识产权局批准。  　　第七条 申领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核发专利行政执法证件和执法标识：  　　（一）年度考核结果有不称职等次的：  　　（二）近两年在行政执法工作中有违法违纪行为的：  　　（三）有其他不应当核发的情形的。  　　第八条 专利行政执法证件丢失或损毁的，持证人应及时报告所在管理专利工作的部门，经查证属实后，逐级报国家知识产权局。  　　需要补办专利行政执法证件的，持证人须重新填写《专利行政执法证件和执法标识申领表》，还应当提交原证件作废说明，说明内容包括姓名、性别、工作单位、职务、证号、丢失/毁损事由等，加盖所在单位公章，经所属省、自治区、直辖市管理专利工作的部门审核后，统一报送国家知识产权局批准。  　　第九条 持有专利行政执法证件的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须重新填写《专利行政执法证件和执法标识申领表》，连同原证件报送所在管理专利工作的部门，并提交执法证件换证申请：  　　（一）工作调动或职务变更的：  　　（二）部门单位机构合并、新设及名称变更的：  　　（三）证件有效期届满的。  　　证件有效期届满的持证人员须提前六个月申报。由国家知识产权局作旧证销毁，予以更换新证。  第三章 专利行政执法证件和执法标识的使用、管理  　　第十条 专利行政执法人员在履行专利行政执法职责时，应当随身携带并主动出示专利行政执法证件并佩戴执法标识。  　　专利行政执法人员不得将专利行政执法证件和执法标识用于非公务活动。  　　第十一条 专利行政执法人员应在专利行政执法证件载明的执法区域内从事执法活动。  　　第十二条 专利行政执法人员应在有效期限内使用专利行政执法证件，超出有效期限不得使用。  　　第十三条 专利行政执法证件实行一人一证一号制度。持证人应当妥善保管专利行政执法证件，不得涂改、复制、转借、抵押、赠送、买卖、变造或者故意损毁。  　　第十四条 持有专利行政执法证件的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所在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收回其执法证件，并交国家知识产权局注销：  　　（一）未通过核检或到期未核检的：  　　（二）调离管理专利工作的部门的：  　　（三）辞职、辞退、长期休假、退休或死亡的：  　　（四）发证机关认为应当收回的。  　　除上述条款第（二）项规定的情形外，被注销执法证件的人员，两年之内不得再申请领取专利行政执法证件。  　　第十五条 持有专利行政执法证件的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所在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暂扣其专利行政执法证件：  　　（一）依有关规定履行法定职责、执行公务时，没有或拒绝出示执法证件，尚未造成严重后果的：  　　（二）因涉嫌违法违纪被立案审查，尚未做出结论的：  　　（三）受到开除以外行政处分的：  　　（四）依法被停止履行执法职责的：  　　（五）故意复制、转借、抵押、赠送、出卖给他人，故意损毁专利行政执法证件，尚未造成严重后果的：  （六）因其他原因应当暂扣的。  　　被暂扣行政执法证件者须向所在的部门做出书面说明或书面检查，扣证期间不得从事行政执法工作。  　　第十六条 持有专利行政执法证件的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所在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收回其执法证件，并报请国家知识产权局吊销：  　　（一）超越法定权限执法或者违反法定程序执法，造成严重后果的：  （二）在非履行职责和执行公务时使用执法证件，造成不良影响的：  　　（三）将专利行政执法证件复制、转借、抵押、赠送、出卖给他人、故意损毁，造成严重后果的：  　　（四）变造专利行政执法证件的：  　　（五）利用专利行政执法证件进行违法违纪活动的：  　　（六）有徇私舞弊、玩忽职守等渎职行为的：  　　（七）受到开除公职行政处分的：  　　（八）受到行政拘留处罚或者判处刑罚的：  （九）有其他违纪违法行为，不宜从事专利行政执法工作的。  　　被吊销专利行政执法证件的人员，不得再从事专利行政执法工作。  　　第十七条 专利行政执法证件被暂扣、注销、吊销的，应将专利行政执法标识及时上交所在管理专利工作的部门。  　　专利行政执法证件失效或者超过有效期限的，不得再使用专利行政执法标识。  第四章 专利行政执法证件的核检  　　第十八条 专利行政执法证件实行核检制度，每两年进行一次核检。  　　第十九条 对持证人的核检应考虑以下情形：  　　（一）执法工作考核情况：  　　（二）参加执法培训的情况：  　　（三）执法违纪或重大执法过失的情况：  　　（四）受奖励或处分的情况：  　　（五）其他情况。  　　第二十条 对于执法证件核检申请，核检机关根据下列情形分别处理：  　　（一）对符合核检要求的，由核检机关在证件的核检记录栏上贴示当年的核检专用标识，允许持证人继续从事专利行政执法工作：  　　（二）对没有达到核检要求的，不予通过核检。  　　第二十一条 持有专利行政执法证件的人员年度考核成绩不合格的或未按规定参加执法业务培训的，核检不予通过。  　　第二十二条 未经核检的专利行政执法证件自行失效。对失效的专利行政执法证件国家知识产权局予以收回、销毁。  第五章 附 则  　　第二十三条 有关单位或个人违反本办法擅自制作、发放、使用专利行政执法证件和执法标识的，应当依照有关规定予以纪律处分或追究法律责任。  　　第二十四条 严禁任何单位和个人生产、销售和佩戴与专利行政执法标识式样、颜色、图案相同或相近似并足以造成混淆的标志。  　　第二十五条 专利行政执法证件有效期限为六年。有效期满，国家知识产权局予以收回销毁，符合条件的予以更换。  　　第二十六条 国家知识产权局以及专利局、专利复审委员会等下属单位工作人员持有的专利执法证件和执法标识，适用本办法管理。  　　经济技术开发区、高新技术产业开发区等各类非行政区划管理专利工作的部门的工作人员，在申领执法证件和执法标识时，应当同时提交执法区域的情况说明材料。  　　第二十七条 各知识产权维权援助中心和快速维权中心，以及各类非行政区划管理专利工作的部门的工作人员持专利执法证件参与知识产权局办案工作的，应通过办理挂职或借调等手续，符合相关人事规定。  　　第二十八条 本办法由国家知识产权局专利管理司负责解释。  　　第二十九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国家知识产权局此前有关规定与本办法不一致的，依照本办法执行。 |